

1888. 9.3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김 용우
편집인 : 공보관 윤두
전화 : 731-6111~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 례

㉠	공문서형 작성실사결과발표	3
㉡	매 규 제 507 호 : 대공상확실운영요강개정요강 제 508 호 :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전 물단속규정중개정규정	5 7
㉢	고 시 제 743 호 : 보호수지정고시 제 748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 제 752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 775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, 하수도) 실시계획인가	13 13 19 19

(이면재속)

[illegible]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무는 공무원으로서의 호복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㉔ 공 고	
제 635 호 : '88 수렴강습회 개최	31
제 636 호 : 주택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공람공고	22
제 639 호 : 무기과열지구지정공고	22
제 645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및하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	23
제 654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및하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	24
제 658 호 : 제 2 중전기공사업면허실 효공고	25
제 662 호 : 도시계획사업 (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	25

㉕ 구 고 시	
제 46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변경허가 (1 차)	26
제 47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변경허가 (제 8 차)	27
제 269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27

㉖ 구 공 고	
제 23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완료공고	28
제 32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에 따른공람공고	29
제 33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29
제 117 호 :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공고	31

㉗ 사업소고시	
제 22 호 : 선박운항허가고시	33
제 23 호 : 선박운항허가고시	33
제 24 호 : 하천계속점용및변경허가	33
제 25 호 : 하천점용허가	34

㉘ 시고위공고	
제 55 호 : 서울교육상추천공고	34

㉙ 전자계산소공고	
제 1 호 : 회계관계공무원직업등록및제기	35

㉚ 사 령	
-------	--

공 문 시 행

“뜻모아 하나로, 힘모아 세계로”

(관인생략)

서울특별시

시경 01226-227

(731-C151)

1988. 9. 12

수신: 수신처참조

(3년)

제목: 착상심사결과 통보

1. '88년 제7회 시경발전 착상심사결과 및 시상내역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급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에 적극 권장하여 시경발전 착상제도 운영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.

첨부: '88년 제7회 채택착상 내용 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기획관리실장 전결)

수신처: 서과 1-71, 서사 1-57, 서구 1-22, 서보 1-22

'86년 제7회 착상심사결과		- 노력상 : 3건 4명 (1건 공동착상) - 채택유보 : 1건 - 불 채택 : 144건 - 채택착상내용
- 접수건수 : 150건 - 시상대용 : 5건 6명 - 장려상 : 2건 2명		
착상등급	착상내용	비고
장려상	- 접수번호 : 731 - 스프링클러엔진펌프를 이용한 펄 제거 - 한강시민공원이 매년 홍수로 인하여 한강호안, 자진거도로등에 최고 20-50cm까지 펄이 쌓여 인력으로는 제거작업 능력이 미약한바 - 한강시민공원 잔디에 물을 뿌리기 위하여 설치된 스프링클러 엔진펌프에 후드밸브가 부착된 호스를 연결 펄을 흡입하여 분사노즐이 부착된 호스를 연결 배출토목하여 펄 제거 (효과) - 기존장비 활용 작업능률 향상 - 착상자 : 한강관리사업소 기계기사보 연일홍	시장표창및 시상금 30만원
장려상	- 접수번호 : 734 - 회계업무 처리 간소화 -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, 정보비, 기관운영관공비, 관서당반, 차량비를 각과별로 품의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과로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다시 각과별로 원인행위하여 지출하던 것을 - 각과에서 청구 및 지급조서만 작성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일괄 추산 및 원인행위하여 집합지급명세서로 작성 각과별 제과로 입금조치토록 개선 (효과) - 결재과정등 간소화로 업무능률 향상 - 현금(금권) 직접수령에 따른 폐단해소 - 착상자 : 회계과 주사 이규환	

작성종급	작상내용	비고
노력상	○ 접수번호 : 658 - 울림팩대로에 공중전화 (비상) 설치 ○ 울림팩대로 주요구간 (교통사고 다발지점 등) 필요한 지점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전화기 밑에 설치지점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을 급실, 차량정비 및 결연자 보유공장, 주유소, 경찰서 및 파출소, 소방서 등의 전화 번호가 기재된 안내판을 야광판으로 제작 부착하여 비상시에 사용토록함. (효 과) ○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인명구조 및 후속사고 미연방지 ○ 긴급지원 필요시 신속연락 가능 - 작성자 : 시정개발담당관 주사 진복수	시정표창 및 시상금 10 만원
노력상	○ 접수번호 : 674 - 신곡수중보에 무동력 영구작동 싸이론관 설치로 한강수질 개선 ○ 신곡수중보의 고정보 883 m에 10 m 간격으로, 200 mm 무동력 영구작동 싸이론관 (혹이배수관)을 설치하여 수중보안에 쌓인 오니 및 오수물 수중보 하류로 방류토록 하여 한강수질 오염방지 (효 과) ○ 신곡수중보 상류의 한강오염방지 - 작성자 : 한강관리사업소 전기기사보 박지찬	"
노력상	○ 접수번호 : 792 - 전철 (지하철) 이용노인 불편해소 방안 ○ 지하철 (전철) 이용노인 (65 세 이상)들이 지하철 2, 3, 4 호선은 무임승차권을 발부받아 승차하고 ○ 1 호선의 경우 지하철공사 구간은 무임승차권제도가 있어 승차자에 아무런 불편이 없으나 철도청구간에서는 50 % 할인제도가 있어 오류동 승차 청량리역 하차시 250 원의 반액 125 원권을 발매하여야 하나 기본요금 (200 원)의 반액 100 원권을 판매 (사유 : 무임승차구간 제외)하므로 청량리역에서 하차시 자동개폐기가 작동되지 않아 자동개폐기 밑으로 통과하고 있어 심한 모멸감을 갖게 되는 등 불편이 많으므로 ○ 철도청구간에서도 기본운임구간에서 무임승차권을 제작 교부토록 협의 (건의)하여 실시토록하고 ○ 지하철공사에서는 철도청에서 무임승차권을 제작교부시까지 잠정적으로 노인통과 출구를 마련하여 노인이 자동개폐기 밑으로 기어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개선 (효 과) ○ 노인불편사항 해소로 경노사상 고취	시정표창 및 시상금 10 만원

작성동결	작상내용	비고
	○리시아워 출구지체요인 제거 작성자: 기술심사담당관 토목기사 유길상 토목기사보 이득세	
◎서울특별시예규제 507 호 대공상황실운영요강개정요강 대공상황실 운영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988. 9. . 서울특별시 장 제 1 조중 “정보 2 과”를 “대공과”로 한다. 제 2 조 “정보 2 과 1 제장”을 “대공과 1 제장”으로 한다.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, 제 2 호중 “비		
간부”를 “경사이하”로 한다.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, 제 2 호 “정보 2 과장”을 “대공과장”으로 하고 제 3 항중 “타”를 “타업무”로 한다. 제 6 조 제 6 호 다음에 제 7 호를 신설한다. 7. 대공상황실 근무자는 사복을 하고 근무에 당한다. 부 칙 이 요강한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		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		
구	신	
제 1 조 (설치) 경찰국 및 경찰서 정보 2 과에	제 1 조 (설치)	
제 2 조 (상황실의 운영관리) 상황실의 운영관리는 경찰국 및 경찰서 정보 2 과 1 제장이 관장한다.	대공과에	
제 4 조 (근무요원의 편성) ①생략	제 2 조 (상황실의 운영관리)	
1. 경찰국 상황실	...대공과 1 제장이	
경위 1명 비간부 2 명으로	제 4 조 (근무요원의 편성) ①좌동	
2. 경찰서 상황실	1. 경찰국 상황실	
비간부 2 명	경사이하 2 명으로	
제 5 조 (근무요령) ①-② 생략	2. 경찰서 상황실	
	경사이하 2 명	
	제 5 조 (근무요령) ①-② 좌동	

구	신
1. 경찰국에 있어서는 주무제장 경유 정보 2 과장에게.....	1.대공과장에게.....
2. 경찰서장 부재시는 정보 2 과장	2.대공과장
3. 상항실에 보고되는 사안은 타에.....	3. 타업무에.....
제 6 조 (근무자의 준수사항)	제 6 조 (근무자의 준수사항)
1 - 6 생략	1 - 6 좌동
7 신설	7 대공상항실 근무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당한다.

◎서울특별시예규제 508 호

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
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88. 9. .
서울특별시

제 2 조 제 5 호중 “가정용 물탱크”를
“물탱크 전용보호시설 (최소면적제한함)”
로, “기계보호시설 (공장내 노선에 기이
설치된 기계의 보호를 위한 시설로서
벽면이 없는 높이 2.1m 미만)을 “기
계보호시설 (공장등 노선제 설치된 기계
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벽면이 없
고 작업용도가 아닌 순수보호시설”로
한다.

제 3 조중 “주요변경 및 용도변경도”를
“기타 주요변경도”로 한다.

제 4 조 1 항목 “각 공공용지의 관리부서
에서 관장한다. 다만, 철거작업에 대하여
는 구 주택과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
아 처리할 수 있다”를 “해당관리부서
에서 관장하며 관리부서가 분명치 아니
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관리부서를 지정
하여야 한다. 다만, 철거인력 및 장비가
부족할 경우에는 구주택과의 지원을 받

아 처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 4 조 3 항목 “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
한 단속”을 “이와 유사한 사항의 위
법행위에 대한 단속”으로 한다.

제 4 조 5 항목 “중기 관리사업소등에”
를 “건설사업소등에”로 한다.

제 6 조 2 호중 “철거원”을 “감시원”
로, “사진첨부 (3명이상)을 “사진첨
부 (10명이상)”로 한다.

제 7 조 3 항목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전 제 2 항의 조사결과 허가건물에 대
하여는 구청장은 허가부서로 하여금
위법여부등을 재확인토록 할 것이며,
기타사항은 함측관측 및 처리조서에
의거 엄격히 구분 기재하여 그 결과
를 시장에게 보고한다.

제 9 조 2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 9 조 3 항목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전 제 1.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
측법 제 53 조의 3 에 의거 구청장이 특
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고전
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접행할
수 있다.

제 9 조 5 항목 삭제한다.

제 9 조 6 항목 5 항목으로 하고 “공익건
물은 철거에서 제외하고”를 공익건물
의 단속대상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고”로
제 13 조중 “확인점검하고 그결과를 시장
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”를 “확인점검
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"별표 4"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문 책 기 준 표

- 처리지연 (발생보고, 제고, 철거 및 교발) : 경정제 이상
- 항목결과 신발생 적률

정 제 사 유	중 정 제	경 정 제	비 고
(건수별)			
동담당 (구청담당)	16 이상	5-15	• 10 개미만 건물제외
동장 (구청제장)	31 이상	20-30	•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 면적의 1/3 로 계산하여 적용
(면적별 : 평)			
동담당 (구청담당)	151 이상	50-150	
동장 (구청제장)	301 이상	200-300	

• 문책기준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영
소의 소행, 근무성적, 무허가건물,
적발보고,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
상을 참작하여 감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
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무허가건물 단속업무
관계공무원의 문책기준은 서울특별시
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
칙을 적용하고 다만, 처리지연 및
항측결과에 따른 문책은 "별표 4"
의 문책기준표를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개정(안)

(개 정 사 유)

-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단속규정을
관계법규에 의거 조건, 추가함으로
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키고

무허가건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며.

- 단속업무 관계공무원이 항측조사
결과 적출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
철거대상으로 사실보고할 경우 현
행 문책기준에 의거 징계처분을
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
회피하기 위하여 단속제외 등으로
허위보고 하고 사례가 많아 신발
생 무허가건물의 실태를 파악할수
없는 실정으로 문책기준을 하향
조정함으로써 정확한 현황을 파악
하여 정비하고자 함.

(주 요 골 자)

- 단속제외인 부주시설에 대한 대
상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
동일한 용도일 경우 확대 적용
- 무허가건물 단속관계 공무원의
예람단속에 따른 문책기준을 하향
조정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번	정	개	정 (안)	비	고
제 2 조 (용어의 정의)		제 2 조 (용어의 정의)			
5. 부수시설이라 함은.....		5. 부수시설이라 함은.....		부수시설대상	
<u>가정용 물탱크</u>		<u>물탱크 전용 보호실</u> (최소면적에		범위 조정	
.....		한함)			
.....					
<u>기계보호시설</u> (공장내 노천에 기		<u>기계보호시설</u> (공장등 노천에 설치			
설치된 기계의 보호를 위한 시설		된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			
로서 <u>벽면이 없는 높이 2.1 m</u>		서 <u>벽면이 없고</u> 작업용도가 아닌			
<u>피판</u>)		<u>순수보호시설</u>)			
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한다.		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한다.			
제 3 조 (단속의 대상)		제 3 조 (단속의 대상)		조문정리	
이 경우 기준무허가 건물의 대수선		이 경우 기준무허가 건물의 대수선			
주요변경 및 용도변경도 또한 같다.		기타 주요변경도 또한 같다.			
.....					
제 4 조 (단속의 책임소관부서)		제 4 조 (단속의 책임소관부서)		조문정리	
①임야 (그린벨트 포함), 공원, 농지		①임야 (그린벨트 포함), 공원, 농지			
도로, 하천구역구역등 공공용 지역에		도로, 하천구역구역등의 부지가건물에			
서의 부지가건물에 대한 예방단속과		대한 예방단속과 식별 및 원거색인			
적발 및 원거색인 소관부서는 각		소관부서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관장			
공공용지의 관리부서에서 관장한다.		하며 관리부서가 공명치 아니한 경			

제 1422 호

시

제 1988.9.30

51-9

현	행	개	정	(인)	비	고
다만, 철거작업에 대하여는 구 주택 파에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처 리할 수 있다.		우에는 구청장이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야 한다. 다만, 철거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 주택파의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.				
③ 적법건물의 매수권, 주요변경 및 거 타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단속		③.....이와 유사한 사항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.....			조문정리	
⑤ 구에 보유하고 있는 장기관리사업소등에 장비지원을 하여 야 한다.		⑤ 구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소등에 장비지원을 하여 야 한다.			사업소명칭변경	
제 6 조 (단속체제 운영방법) 2. 철거반 운영 구의 철거반은 철거원		제 6 조 (단속체제 운영방법) 2. 철거반 운영 구의 철거반은 감시원			명칭변경	
제 7 조 (항공촬영업무처리) ③ 전 제 2 항의 조사결과를 구청장은 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밀회 허가대상 의 조회등으로 재확인할 것이며.....		제 7 조 (항공촬영업무처리) ③ 전 제 2 항의 조사결과 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허가부속로 하여금 위법여부등을 재확인토록 할것이며.....			조문정리	
제 9 조 (철거업무처리) ② 도시계획상철거한다. 다만, 가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전 ①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자는		제 9 조 (철거업무처리) ② 도시계획상.....철거한다. ③ 전 ①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 법 제 53 조의 3 에 의거 구청장이 특			단서조항 삭제	
					조문정리	

51-10

제 1422 호 시

제

1988. 9. 30

현행	개정(안)	비고
재고하거나 재고를 생략할 수 있다. ⑤철거원은 철거업무만 전담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업무를 명할 수 있다. ⑥공공, 공용 및 공익전부은 철거에서 제외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. 제 13 조 (단속업무확일) 구청장은 매년 2 회 (상, 하반기별) 소속 통사무소의 신발생 구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업무수행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. 제 9 조 6 항을 5 항으로 하고 ⑤공공, 공용 및 공익건물의 단속대상 어부는 구청장이 결정하고, 관계기관에 통보한다. 제 13 조 (단속업무확일) 확인점검한다. 부 칙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구허가건물 단속업무 관계 공무원의 문책기준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실시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다만, 처리지연 및 상추선외에 비문 문책은 "별표 4"의 문책기준표를 적용한다.	5 항목삭제 조문정리 조문정리

현						개 정 (안)				비 고
"별표 4" 문 책 기 준 표						"별표 4" 문 책 기 준 표				
○ 처리지인 (발생보고, 제고, 원저 및 고발) : 권제이상 ○ 형주결과 실패명 적출						○ 처리지인 (발생보고, 제고, 원저 및 고발) : 결정제 이상 ○ 형주결과 실패명 적출				
정 제 사 유	파면	해임	정직	감봉	권책	비 고	정 제 사 유	중 정 제	경 정 제	비 고
(진수변)							(진수변)			
동업당 (구형당당)	10	8	6	4	3	· 10 제미만 건물 제외 · 가설물은 발생전수 수의 1/3 로 제산하여 적출 · 발생행태, 규모, 원인을 분석하고 장소 단속실적등을 참기하여 제 등	동업당 (구형당당)	16 이상	5-15	· 10 제미만 건물 제외 · 가설물은 발생전수 또는 발생면적의 1/3 로 제산하여 적출
동 장 (구형제장)	21	19	16	13	10		동 장 (구형제장)	31 이상	20-30	
(면적변)							(면적변)			
동업당 (구형당당)	132	116	83	59	33		동업당 (구형당당)	151 이상	50-150	
동 장 (구형제장)	330	264	198	132	100		동 장 (구형제장)	301 이상	200-300	
						· 문책기준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장소의 소행, 근무 실적, 우회가견문, 적발보고, 현재실적 및 기타의 정 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○ 위반사항을 자기책임하여 원상복구, 서정조치하였을 때에는 감경할 수 있다				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43 호

보 호 수 지 정

삼헌법 제 67 조 및 동법시행령 제

보 호 수 지 정 내 역

지정 번호	지정 품격	수	종	주 소	수 목 원 황			
					수	고	둘고둘레	수관직경
1-1-1-41	동나무	노티나무	1	주	300년	18m	3.3m	20m

소	재	지	소	유	자
종로구	가회동	5번지	종로구	가회동	5번지 김삼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48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 고시 제 768(64.1.24) 호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77의 1-행당동 298의 90번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 하오니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8년 9월 일

서울특별시 장

- 가. 서울시행지의 위치
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77의 1-행당동 298의 90번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○ 종류: 도시계획사업(도로)
○ 명칭: 하왕십리-행당동간 도로개설공사
- 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○ 폭원: 8-10미터, 연장: 110미터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, 주소
○ 성명: 서울특별시청(성동구청장)
○ 주소: 서울시 중구 대보로 31번지

마. 사업의 착수, 준공 예정년월일
 ○ 착수예정년월일: 1988년 9월 20일
 ○ 준공예정년월일: 1989년 1월 20일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
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의
 의 권리의 명세

토 지 조 서

소재지	지 번	지 목	수용토 면적	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	실지의 상황
서울시 성동구	976 -14	도로	307 m ²	—	도 로
하왕십 리 동	976 -25	대	25	—	주 택 부 지
	976 -26	대	19	—	위 와 갈 음
	977 - 5	대	241	1. 근저당권설정 (공장저당법제 7 조) ○ 원인: 1974. 4.10 설정계약 ○ 채권최고액: 1 억원 ○ 채무자: 삼광직물㈜ 서울성동구 하왕십리동 977 ○ 근저당권자: ㈜한국상업은행 서울중구 남대문로 2 가 111-1 ○ 공동담보: 목록 제 121 호에 의한 다 의 부동산	공 장 부 지

소재지	지번	지목	수용토 면적	소유권이외의 권리와 종류 및 내용	실지의 상황
				2. 근저당권설정 (공장저당법 제 7 조) ○원 인: 1978.12.11 설정계약 ○채권최고액: 2 억원 ○채무자: 삼광직물㈜ 서울성동구 하왕십리동 977 ○근저당권자: ㈜한국상업은행 서울중구 남대문 2 가 111-1 ○공동담보: 목록제 632 호 공장목록 제 445 호	
	977 - 7	대	106	1. 압류 ○원인: 1975.12. 1 시세 채납 처분에 의한 압류 ○권리자: 서울특별시 (성동구청) 2. 근저당권설정 (공장저당법 제 7 조) ○원 인: 1974. 4.10 설정계약 ○채권최고액: 1 억원 ○채무자: 삼광직물㈜ 서울성동구 하왕십리동 977 ○근저당권자: ㈜한국상업은행 서울중구 남대문로 2 가 111-1 ○공동담보: 목록 제 121 호에 의한 타의 부동산 3. 근저당권설정 (공장저당법 제 7 조) ○원 인: 1978.12.11 설정계약 ○채권최고액: 2 억원 ○채무자: 삼광직물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77 ○근저당권자: ㈜한국상업은행 서울중구 남대문로 2 가 111-1 ○공동담보: 목록 제 632 호 공장목록 제 445 호	위와 같음

소재지	지 번	지 목	수용토 능사용지	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	실지의 상황	
행당동	298-3	대	3	1.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(등기부등본 갑구의 1,3 번) ○ 원 인 : 1987. 3.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소 제기 (87 가 합 695 호)	행당동 298-3 번지상 토지의 일부임	
	298-85	도로	190	—	행당동 298-85 번지상 토지의 일부임	
	299-14	대	66	—	도 로	
건 물 조 서						
소재지	지 번	지 목	물건의 종 류	수 량 (면적)	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	실지의 상황
서울시 성동구 하왕실리 동	976-25	대	담 장	20.8 m ²		하왕실리동 976-25번지상 건물 의 일부임
	977-7	대	대 문	4.3		
	976-14	도로	건 물	9.0		하왕실리동 976-22번지상 건물 의 일부임 (건물: 2개소)
	976-26	대	담 장 대 문	11.7 6.0		
	976-14	도로	건 물	19.0	1. 근저당권설정 ○ 원 인 : 1974.4.10 설정계약 ○ 채권최고액: 1억 원 ○ 채무자: 삼광직물(주) 서울성동구 하왕실리동 977	하왕실리동 977-1번지 상 건물의 일부 임 (건물, 담 장: 각 2개소)
	977-5	대	담 장	37.1	○ 근저당권자: (주)한국상업은행 서울중구 남대문로 2가 111-1	
	977-7	대	대 문	6.3	○ 공동담보: 목록 제 121호에 의 한 타의 부동산	

제 1985. 12. 30

51-17

소재지	지번	지목	물건의 종 류	수량 (㎡)	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	합계의 산지
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 동	977-5 977-7	대 대	담장	40.0	1. 근저당권설정 (공장저당법 제 7 조) ○원 인 : 1974.4.10 설정계약 ○채권최고액 : 1 억원 ○채무자 : 삼광직물㈜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 977 ○근저당권자 : ㈜ 한국상업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11 - 1 ○공동담보 : 목록 제 121 호에 의한 타의부동산 2. 근저당권설정 (공장저당법 제 7 조) ○원 인 : 1978.12.11 설정계약 ○채권최고액 : 2 억원 ○채무자 : 삼광직물㈜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 977 ○근저당권자 : ㈜ 한국상업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11-1 ○공동담보 : 목록 제 632 호 공장목록 제 445 호	하왕십리동 977-6 번지 상 건물의 일 부임
하왕십리 동 행당동	976-14 298-85 299-14	도로 도로 대	건물 담장 대문	4.0 11.8 4.8	—	행당동 298-3 번지상 건물 의 일부임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○ 토 지

소재지	지번	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		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관계인		비 고
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서울시 성동구	976-14		서울특별시			

소재지	지번	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		토지수용법제 4조제 3항관계인		비고
		주 소	성명	주 소	성명	
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	976-25	서울시성동구하왕십리동 976	이 세 문	.		
	976-26	서울시성동구행당동 117-28	황 열 길			
	977-5	서울시중구태평로 2가 133	홍 정 모	서울시중구남대문로 2가 111-1	대한국상업은행	
	977-7	위와 같음	위와 같음	위와 같음	위와 같음 서울특별시 (성동구청)	
	298-3	서울시성동구행당동 298-3	박 갑 배		소유권만소 예고등기(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)	
행당동	298-85	서울시성동구마장동 451-5	이 봉 실			
	299-14		서울특별시			
			대한민국 (재무부)			
○ 건 물						
소재지	지번	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		토지수용법제 4조 1항의관계인		비고
		주 소	성명	주 소	성명	
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	976-22	서울시성동구하왕십리동 976	김 갑 중			
	976-22	서울시성동구하왕십리동 976-22	황 열 길			
	977-1	서울시중구태평로 2가 133	홍 정 모	서울시중구남대문로 2가 111-1	대한국상업은행	
	977-6	위와 같음	위와 같음	위와 같음	위와 같음	
행당동	298-3	서울시성동구행당동 298-3	박 갑 배	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52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
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
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 5 규정에
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- 다 음 -

1. 사업명 : 상일동 대림산업㈜ 연
립주택 신축공사
2. 사업주체 : 종로구수송동 167
대림산업㈜ 대표 이원현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
가. 위치 : 강동구상일동 178 번지
나. 면적 : 27,316.11㎡
다. 규모 : 연립주택 3층 10동 108
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
4. 사업시행기간 : 88.9 ~ 89.12
첨부 : 설계도서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75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, 하수도)

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49-20-
247-2 간 12필지 도로개설공사에

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576 호
(88.9.1)로 실시 계획 공람공고
를 한바 이의 없어

2. 도시계획법 제 25 조, 제 26 조 및
동법시행령 제 26 조에 의거 이를
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. 9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
풍납동 249-20-247-2 간 12 필지
나. 사업의 종류 및 경칭 : 풍납동
249-20-247-2 간 도로개설공사
다. 사업의 규모 : 도로개설

$$B = 6 - 8 m, L = 112 m$$

-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송파
구청장)

- 마.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
일

○ 착 공 : 인가일로부터 일
이내

○ 준공예정일 : 88.10.31

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 (변칙)

- 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
3 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인 주소

성명 : 별첨

토 지 조 서

순위	위 치	지목	면적	단위	소 유 자	비고
1	풍납동 247-2	도로	155		충남 제천군 제천읍 중앙로 2가 12-7 송영득	
2	" 248-19	대	41	"	경기도 시흥군 파천면 관문리 주 공 아파트 917-412 호 최석대	
3	" 248-20	"	41	"	송파구 풍납동 248-15 김재환	
4	" 248-21	"	80	"	성동구 중곡동 258-20 오공식	
5	" 248-23	"	16	"	송파구 풍납동 248-9 배기원	
6	" 248-24	"	34	"	동작구 흑석동 231-40 김필순	
7	" 249-10	"	69	"	성동구 중곡동 18-12 오공식	
8	" 249-12	"	11	"	시초구 양재동 8-39 조희송	
9	" 249-16	"	6	"	"	
10	" 249-17	"	52	"	송파구 풍납동 249-7 정찬영	
11	" 249-18	"	83	"	" " 249-8 서원홍	
12	" 249-20	"	67	"	" " 249-9 서정조	

지 질 물 조 서

순위	위 치	품명	수량	단위	소 유 자	비고
1	풍납동 249-17	전 물 담 장 변 소	31 13 1	m ² m 식	송파구 풍납동 249-7 정 찬 영	
2	" 249-18	전 물 담 장 라일락	48 2 1	m ² m 주	송파구 풍납동 249-8 서 원 홍	
3	" 249-20	전 물 담 장 변 소	22 4 1	m ² m 식	송파구 풍납동 249-9 서 정 조	
4	" 248-23	전 물	10	m ²	송파구 풍납동 248-9 배기원	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35 호

'88 수협 강습회 개최

조수보호 및 수협에 관한 법률 제 15 조제 1 항, 제 3 항 및 동시행규칙 제 32 조제 1 항에 의거 '88 년도 우리시 수협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

1988. 9. 9

서울특별시장

1. 개최일시: '88. 10. 17~10. 19, 11. 15
(13:00-18:00)

2. 개최장소: 백령국제종합사격장

3. 수강대상 (내국인)

가. 열종 및 공기총소지자로 수협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자

나. 강습이수후 1 년안이 면허를 받지 않은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

다. 수협면허기간이 끝나 갱신발급을 받고자 하는자

라. 공기총소지자로 유해조수 (참석) 포획허가를 받고자 하는자

4. 수강신청 (내국인)

가. 강습회개최 3 일전까지 사단법인 한국엽도협회에 수협강습회 수강신청서접수 (규칙 제 31 조제 1 항)

나. 동협회에 전화신청후 강습후 당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.

다. 서울시내 각급 총포사를 통하거나 신청하여도 무방함.

라. 수협강습회 개최사항 개별통보시 수강신청서 동봉

마. 부득이한 사유로 기정일자 및 거주지역에서 강습을 받지 못한자는 다음일자 또는 타지역에서도 수강가능

5. 강습회 수강료: 1인당 10,000 원
(수강신청시 현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엽도협회에 납부)

6. 주 관: 사단법인 한국엽도협회

7. 문의처

· 서울특별시 녹지과
(전화 731-6417, 6418)

· 자구청 공원녹지과

· 사단법인 한국엽도협회
(전화 798-7126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38 호

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공람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323호(78.7.14)로 사업시행인가된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용암계 4-2구역의 사업시행기간연기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31 조 및 건설법시행령 제 58 조에 의거 일련에

게 공람공고합니다.

2.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988. 9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- 가. 사업명칭 : 용암계 4-2 구역 주택개발재개발사업
나.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

위 치	면 적	주 택 개 량		사업시행기간	사업시행기간변경
		대 상	실 적		
은평구 용암 4 동 250 번지일대	202,736㎡ (61,327평)	1,323동	515동 (38.9%)	'78.7.14 ~ '88.12.31	시행인가일로부터 1993.12.31 까지

다. 시 행 자 : 서울특별시장

라. 공람기간 : '88.9.20-'88.10.20
(30 일간)

마. 공람및의견서제출처 : 은평구청
주택과

바. 설계도서및조서 : 기인가 내용과
동일 (생략)

사. 수용또는사용할토지 및 건물조서 : 기인가내용과 동일 (생략)

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제 2 항
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1988. 9. 12

서울특별시장 김용래

다 음

1. 지정구역 : 서울특별시성동구용봉동
주택개발재개발 금호 1 구
역 2 지구
2. 면 적 : 32,705㎡
3. 주택명 (아파트명) : 성동구용봉동
현대아파트
4. 규 모 : 아파트 10-15 층 9 동 644
세대 (관리처분계획에 의
거 조합원에게 분양되는
주택은 제외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39 호

투 기 과 열 지 구 지 정

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3 조의 2, 제

5. 사업주체: 주택개발조합 공회 1구
역 2지구 재개발조합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45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및하수도)
실시계획공람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(78.4.25)
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 및 서
술시고시 제232호(78.5.24)호로
지적승인된 노량진 2동 31-249간 도
로확장공사 및 서고 제204호(87.3.25)
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 및 서
술시고시 제562(88.6.28)호로 지
적승인된 동작국교후문 진입로포장공
사 서고 제752(87.10.29) 도시계획시
설결정 및 서고 제60(88.1.27) 지적승
인등 사당4동 235-244간의 1개소

하수도상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
(도로및하수도) 실시계획인가코자
도시계획법 제25조2항 규정에 의
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.

2.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
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
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3.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도목과와 건
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, 건물소유
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가. 공람장소

동작구청 도목과, 건설관리과

나. 공람기간

'88. 9.16 ~ '88. 9.30

1988. 9.16

서울특별시 상

공 란 개 요

사업시행지	사업의 종류 명	사업의 규 모	사 업 시 행 자	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	시 설 결 정 및 지 적 승 인 시 설 결 정
노량진 2 동 31-249 간	노량진 2 동 31 -249 간 도로 확장공사	B=8m L=220m	서울특 별시장	인 가 일 '89.6.30	도시계획시설결정 서고 제174호(78.4.25) 지적고시 제232호 (78.5.24)
동작국교후 문 동작동 산9의1- 산10의5	동작국교후문 진입로포장 공사	B=6m L=105m	"	"	도시계획시설결정 서고 제204호(87.3.25) 지적고시 제562호 (88.6.28)
사당4동 242번지 주변	사당4동 235- 244간의 1개 소 하수도장 공사	B=6-7m L=70m	"	"	도시계획시설결정 (87.10.29) 지적고시 제60호 (88.1.7)

1. 수용토는 사용토지 전물의 소재,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:생략
2. 토지 또는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주소, 성명:생략
3. 기타사항: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54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, 하수도)

실시계획공람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56 호 (76.12.30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(도로, 하수도) 의 사업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

고합니다.

2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, 미수령자를 본 공고로 가류합니다.

가. 공람장소: 송파구청 토목과
(전화 410-3405)

나.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
1988. 9.

서울특별시 장

-공람개요-

1. 사업명: 마천동 200-35번지앞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
2. 사업시행지: 마천동 194-14 ~ 191-8
3. 사업규모: 도로개설 B = 6m,
L = 70m
4. 사업시행기간: 인가일로부터 1년
5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
(송파구청장)
6. 기타: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 제출바람.

토 지 조 서

연번	지번	지목	면적	소유자주소성명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1	마천동 194-14	대	173	성동구광장동 320-59	지기대
2	" 191-47	대	16	마천동 190-20	김선옥

연번	지 번	지목	면적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
3	마천동 191-49	대	57	마천동 165	구영모	
4	" 191-50	"	10	서대문구 남가좌동 190-72	"	
5	" 191-8	도	42	" 홍계동 19-25	손오영	
6	" 193-15	대	22	마천동 193-5	구영모	
7	" 191-48	"	2	성내동 196-3	양대식	
8	" 191-28	"	26	잠실 4 동시영(아) 89동52호	권태연	
9	" 192-2	도	59	동대문구 면목동 98-29	"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58 호

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실호

전기공사업법 제 30 조 5 항의 규정
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

다음과 같이 실효 시분하였기 동법
제 42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
합니다.

1988.9.19.

서울특별시장

다

음

면허번호	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사유
제 673 호	범진전설(주)	양천구 목동 513	이상교	전기공사업 폐지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62 호

도시계획사업(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가 결정 및 지적승인
한 다음 도시계획 시설(수도)에 대
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져 도시
계획법 제 25 조 제 2 항 및 동시행
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관계
서류를 공람합니다.

2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

개별 통지한 것이나, 미수령 자에
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3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수도공사와
및 선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
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
하고 있으며, 본사업 시행에 따른
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
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988.9.22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개요						
사업시행지	사업종류 및 사업명칭	규모	착공	준공	결정고시 일자	지적고시일자
신림동산 105-11	신림 7동배수지및 관로부설공사	Q = 500 TON	'88.6	'88.11	서고 제 731호	확충
신림 9동산 68-3	신림 9동배수지 설치공사	Q = 2,000 TON	'88.7	'88.10	서고 제 731호	"
동작구사당동 산 32-85	북천 6동배수지및 관로부설공사	Q = 2,500 TON	'88.9	'88.12	서고 제 731호	"

나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청 (관악구청장)

다.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: 생략

라. 위치도 및 계획경면도: 생략

마.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바. 공람장소: 관악구청 수도공사와 및 건설관리과

사.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수도공사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 고 시

◎중랑고시제 46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
(제 4 차)

1. 동대문고시 제 49 호 ('87.10.13) 로 도시계획사업 변경허가된 중랑구 망우동 239-1 외 4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 및 행정권한위임규정 ('86.12.18) 에 의거 동사업시행 변경 허가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제도서는 중랑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8.9.7.

중 랑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: 중랑구 망우동 239-1 외 4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송곡고등학교 (구 성동상업학교) 신축공사

다. 사업의 편적 및 규모

○ 토지면적: 10,716.28 m²

○ 건물 연면적: 13,888.86 m²

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: 변동사항 없음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월일

○ 착수년월일: '85.6.4

○ 준공예정일

(당초) '88.7.30

(변경) '89.7.30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전환의 소재지, 지번, 지적 및 소유권이의의 명세 변경사항 없음.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: 변동사항 없음.

◎ 중랑구 고시 제 47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변경허가(제 8 차)

1. 시고시 제 499 호(85. 7. 26) 및 동대문 고시 제 50 호(87. 10. 13) 호 도시계획 사업 변경허가된 중랑구 면목동 49-3 의 6 필지에 대하여 준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 및 행정권한 위임규정(86. 13. 18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 변경허가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시는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8. 9. 7

중 랑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자: 중랑구 면목동 49-3 의 6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학교) 서일전문 대학시설 확충 공사

다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○ 토지: 12,699.7 m²

○ 건물(연면적): 8,020.86 m²

라. 사업 시행자 주소, 성명: 중랑구 면목동 49-3 세발학원
대표이사 이 용 관

마.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

○ 착공일: 81. 10. 31.

○ 준공예정일: 당초 83. 7. 30 일
변경 89. 12. 31 일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: 변경없음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: 변경없음

아. 설계도서: 생략

◎ 노원구 고시 제 269 호

"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"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. 9.

노 원 구 청 장

1. 사업명: 민영주택건설 사업	나. 대지면적: 13,590 m^2
2. 사업주체: 서초구 잠원동 130-17 한신공업(주) 김태형	다. 건축면적: 34,010,944 m^2
3.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규모	라. 규모: 아파트 7-15층 5동 348세대 (부대시설: 노인정 및 관리사무소)
가. 위치: 노원구 상계동 135-2와 5필지	마. 사업시행기간: '88.9-'90.2.
4.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(폐지)	

구분	등급	류별	목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소로	1	10	128 m	상계동 135-58	상계동 산 133-9		
변경	1	10	31 m	상계동 산 133-9	상계동 산 133-9	97 m 구간폐지	

구 공 고

성 동 구 청 장

◎성동구 공고 제 23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완료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(83.1.26) 제 209 호 (84.4.23) 제 843 호 (85.12.13), 제 812 호 (86.11.11) 및 성동구 고시 54 호 (77.8.14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 및 변경허가된 성동구 관내 신화학원에 대하여 사업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제 85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(전화 450-1385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8. 9.12

- 가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25 번지 일대
- 나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)
명칭: 선화예술중고등학교 및 경복국민학교시설확충
- 다. 사업의 규모
[학교부지: 33,130.3 제곱미터
연 면 적: 7,944.54 제곱미터
- 라. 사업시행자주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25
성명: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장 박 보 희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[착 수: 83. 1.
준공예정일: 88.12.30.
준 공 일: 88. 9.10.

바. 공사설계도서: 준공도면 생략 (허가시와 동일)

◎종로구공고제 32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에따른공람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1 호 (78.7.4) 및 같은 고시 제 585 호 (78.11.9)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배화여자전문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에 따른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,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988. 9.20

종로구청장

가. 사업시행지: 종로구 누상동 산 1의 33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
명칭: 배화여자전문대학교
시설확충

다. 시행면적: 45,530 ㎡

라. 금회 사업내역

○ 금회허가: 학생복기시설 신축 4층

1동, 연건축면적: 2,900.55 ㎡

마. 사업의 착수년월일: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

준공예정일: 1989.5.30

바. 사업시행주 주소, 성명: 종로구 원운동 12번지 학교법인 대화학원 이사장 황준경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
조서: 따로 붙임 (종로구청 도시경비과
비과 바키)

야. 공람기간: '88.9.20~'89.10.4(14일간)

자. 기타: 상세한 내용 및 의견은 종로구청 도시경비과 (전화 734-2935) 문의 또는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◎종로구공고제 33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

1. 서울시가 결정 및 지적고시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준사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하며,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기간내 종로구청 도목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1988. 9.22

종로구청장

- 공 랑 요 지 -

가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
나. 사업개요

사업시행지	사업의명칭	규 모	착 공 일	준공예정일	결정및저적고시일
신영동로타리	신영동로타 리가각정리 공사	가각정리 1식	인가고시 일로부터	89.12.31	서고시제 173호 88년 3월 10일

다. 사업시행자: 종로구청장
라. 수용할 토지 (건물) 조서 및 계
획도면: 생략
마. 공람장소: 종로구청 토목과

바. 공람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4
일간
사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종로구청
토목과 (734-3152) 문의.

토 지 조 서

번호	지 번	지목	지적	면적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이의 의권리명세
					관계인주소성명		
1	종로구신영동 16-4	잡	90	90	종로구중학동 16	이호판	
2	" 15-6	전	6	6	서대문구연희동 188-69	박원규	
3	" 14-9	대	16	16	강동구길동산 1-1	송영권	
					삼익맨션 502-507		
4	" 14-11	대	13	13	서대문구갈현동 12-101	윤석우	
5	" 14-12	대	6	6	종로구신영동 5	고창화	
6	" 14-10	대	5	6	"	"	
7	" 10-23	대	19	19	종로구신영동 10-15	김집경	
8	" 10-22	대	24	24	" 10-14	최신자	
9	" 26-2	대	282	282	춘천시효자 1동 555	김유봉	
10	" 29-10	대	13	13	종로구신영동 214-44	홍백선	

번호	지번	지목	지적	면적 ㎡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
					관계인 주소 성명		
11	중로구신영동 29-11	대	265	265	중로구신영동 29-7	손영호	
12	" 30-8	대	199	199	중구정동 18-1	영은현	
13	중로구명창동 290-25	대	233	233	중로구궁정동 91	이준대	

건 물 조 서

번호	건물소재지	건물종류	구 조	전 면 적 (㎡)	면 적 (㎡)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이외 의 권리명세
						관계인주소성명		
1	신영동 29-7	주 택 근린생활	철근, 콘크리트 스라브	339.7	339.7	부안동 184-3	손영호	
2	" 26	사 무 실	세멘트 벽돌조, 외집	20.86	20.86	충천사초자동 553	김구봉	
3	" 26	주 택	목조, 외집	10.74	10.74	"	"	
4	" 10-14	주 택 근린생활	연와조, 스라브	37.08	20	중로구신영동 10-14	최신자	
5	" 10-15	"	"	102.8	20	10-15	김철영	
6	" 14-1	주 택 소재지실	세멘트벽돌 세멘트외집	53.49	20	14-1	최장자	
7	" 16	주 택	세멘트벽돌 외집	45.53	15	16	이호관	

◎은평구공고제 117 호

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

1. 전설부고시 제 2493 호 (66.6.21) 로
시설결정 및 전설부고시 제 2948 호

(66.12.17) 로 지적고지하고 석울특
별고지 제 243 호 (88.4.9) 로 도시
계획사업실시인가된 서부세무서-국립
보건원간 도로개설공사에 제2회 토
지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
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
의결을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17 조

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
가. 토지소재지 및 내역: 별 첨
나. 기 업 자: 서울특별시(은평구청장)
다. 공고기간: 88.9.8-88.9.23
라. 위 공고에 대하여 공고기간내 열

람하시고 토지수용법 제 17조 3항
의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
회에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.

1988. 9. 8
은 평 구 청 장

번호	소 재 지	지 목 (물건)	지 적 (수량)	보 상 금 액		소유자주소성명	소유권이외
				단 가	금 액	관계인주소성명	의권리명세
1	녹번동 117-130	대	35㎡	900,000	31,500,000	녹번동 117-61 정난지	
2	" 117-131	대	34㎡	500,000	17,000,000	" 109-9 이인규	
3	" 117-95	건 물	1㎡		290,000	" "	
		부 역	7㎡	50,000	350,000	" "	
		대 문	1 식		190,000	" "	
		창 고	1.3㎡		75,000	" "	
		담 장	18.4㎡	6,500	119,600	" "	
		정 원 석	1 식		35,000	" "	
		관 상 수	5 주			" "	
		수도 전	1 식		50,000	" "	
		연 탄	1 식		50,000	" "	
		보 일 러					
4	녹번동 117-144	도	540㎡	63,000	34,020,000	종로구사직동 장대인	
5	" 117-61	건 물 (1층)	9㎡		4,750,000	은평구녹번동 호보영	
		건 물 (2층)	9㎡			117-61	
		부속건물	20㎡	54,500	1,090,000	" "	
		계량기제 이전비	1 식		160,000	" "	

사 업 소 고 시

◎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22 호

선 박 운 함 허 가

한강구역내 선박영업에 대하여 하천

법 제 25 조제 1 항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 25 조제 4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
1988. 9.

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

○ 선박운항 허가 내용

접용수허가자	접 용 위 치	접 용 목 적	접 용 내 역
삼덕수생배저항 심 병 천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3 한강	수상스키 (모타보트) 경영을 위한 선박운항	선박 (모타보트) 5척

○ 허가기간: '88. 9. 7 ~ 88. 10. 31.

◎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23 호

선 박 운 함 허 가

한강구역내 선박 (보트) 영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 25 조제 1 항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동법 제 25 조

제 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
1988. 9.

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

○ 선박의 운항 허가내용

접용수허가자	접 용 위 치	접 용 목 적	접 용 내 역
한 차 상 업 대표 권 태 덕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83 번지 선알 한강	보트 운영을 위한 선박운항	FRP 보트 30척 총 50척

○ 허가기간: '88. 9. 7 ~ 11. 30

◎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24 호

하천 계속 접 용 및 변경 허가

하천법 제 2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접용허가

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988. 9. 9.

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

허가 년월일	위 치	지목	점용면적	점용목적	점용기간	허가 받은 자	
						주 소	성 명
'88. 9.9.	서울특별시 성동구자양 동 427-7 번지선(한강)	하천	510㎡ (당초: 480㎡ 추가: 30㎡)	유선장설치	1988.8.28 ~ 1989.8.28	인천시남동구 구월동 203번지 대리인: 서울시성동구자양동 477번지 최원규	한창산업(독점 보트점 권택덕)

◎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25 호

하 천 점 용 허 가

하천법 제 25조제 1항의 규정에 의
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허가

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
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988. 9. 12.

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

허가 년월일	위 치	지목	점용면적	점용목적	점용기간	허가 받은 자	
						주 소	성 명
'88. 9.12	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의 도동 85-1 번 지의 2개소 (한강)	하천	174.87㎡ (개소당 58.29㎡ × 3개소)	이동식음 식점설치	1988.9.12 ~ 1989.9.12	인천직할시 남동구만수동 삼 1 ~ 2 번지	주 원 광 대 표 이 사 류 복 수

시 교 위 공 고

◎ 시 교 위 공 고 제 55 호

서 울 교 육 상 추 천

서울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
저한 분에게 제 10 회 (1988 년도) 서
울교육상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
수상후보자 추천을 공고합니다.

1. 시상부문 및 인원
가. 초등교육부문: 2 명

나. 중등교육부문: 2 명

다. 사회교육부문: 1 명

2. 시상내용: 상장 및 메달, 부상 -
상금 1 인당 300 만원

3. 추천대상

가.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,
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사업이나 교
육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
나. 문교정책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사업에
부응하여, 수도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
함으로써, 현저한 공적을 쌓은 자.

4. 추천기관

가. 소속직원 또는 회원 : 각급교육기관장, 공공기관장, 등록된 사회단체의 장

나. 기 관 장 : 지도감독기관의 장

5. 구비서류

가. 공적조서 10 부

나. 공적요약서 10 부

다. 명함관사진 (4 cm × 6 cm) 1 매

라. 이 력 서 1 매

라. 공적증명자료 1 부 (자료에 따라 지서, 청사진, 루시도 등도 포함)

바. 시·읍·면장 발행 신원승명서 (일반인에 한함) 1 부

6. 접수기간 : 1988.10.20 ~ 1988.10.25

7. 접수처 :

가. 초등교육분야 : 당교육위원회

초등교육과

나. 중등교육분야 : 당교육위원회

중등교육과

다. 사회교육분야 : 당교육위원회

사회교육과

8. 시 상 : 1988.12월 예정

(시상일자 추후 통보)

9. 기 타

가. 공적조서, 공적요약서와 사적은 당위원회 초등교육과, 중등교육과, 사회교육과와 각 교육구청 학무과에서 배부함.

나.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위원회나 각 교육구청 학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교육위원회

초등교육과(736-1909)

중등교육과(738-1460)

사회교육과(736-3219)

1988. 9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장

전자계산소공고

◎ 전자계산소공고제 1 호

회계관계 공무원직인등록및 폐기

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인등록 및 폐기 신고하고 동 규칙 제 11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
1988.9.13

전자계산소장

1.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: 1988.9.13

2. 사용직인 : 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 경리관
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 직출원

3. 폐기작인 : 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 분임지출원			
등 록 인		폐 기 인	
인 영	 	인 영	
공인명	정리관 및 지출원	공인명	분임지출원
사 령			
© 1988 년 8 월 19 일 자 기구개편에 따른 재발령 명제 389 호		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
강 신 일	보건환경연구원 사무과장	보건환경연구소	지방행정사무관
이 종 택	보건환경연구원	"	지방행정주사
김 대 중	"	"	"
고 윤 생	"	"	지방행정주사보
최 기 일	"	"	"
강 석 우	"	"	"
정 병 원	"	"	지방행정서기
이 춘 원	"	"	"
김 태 국	"	"	"
박 현 옥	"	"	"
김 영 순	"	"	"
조 정 익	"	"	"
김 병 직	"	"	"
이 현 수	"	"	"
신 재 선	"	"	지방행정서기보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조길환	보건환경연구원	보건환경연구소	지방행정서거보
이광수	"	"	"
이종미	"	"	"
최윤섭	"	"	지방행정직
이완종	"	"	5급상당
김린태	"	"	"
여인학	"	"	"
최금숙	"	"	" 7급상당
성시경	"	"	" "
임재영	"	"	" "
이종현	"	"	" "
이상열	"	"	" "
이상수	"	"	" "
이상천	"	"	" "
정길식	"	"	" "
임귀철	"	"	" "
김영광	"	"	" "
한선규	"	"	" "
장봉훈	"	"	" "
김현국	"	"	" "
주장열	"	"	" 8급상당
이연수	"	"	" "
신도철	"	"	" "
최명욱	"	"	" "
이상일	"	"	" "
김응수	"	"	" "
신성규	"	"	" "
김병록	"	"	" "
라경호	"	"	" "

성명	발령사함	원부서	직급
이 용 기	보건환경연구원	보건환경연구소	지방별정직 8급상당
변 종 과	"	"	"
이 봉 식	"	"	"
이 일 화	"	"	"
장 계 영	"	"	"
정 호 전	"	"	"
김 상 훈	"	"	"
양 명 석	"	"	지방윤건원
			(기능 10 등급)
정 규 선	"	"	"
박 기 철	"	"	"
정 장 웅	"	"	"
김 양 우	"	"	"
김 옥 남	"	"	"
박 환 회	"	"	"
윤 인 권	"	"	"
민 명 일	"	"	지방방호원
윤 병 화	"	"	"
최 성 회	"	"	지방타자원
이 인 호	"	"	지방거제원
권 대 윤	"	"	지방전기보조원
김 수 전	"	"	지방시험원
이 화 섭	"	"	"
이 종 용	"	"	지방감사원
변 영 건	"	"	"
김 명 순	"	"	지방잡두원
박 원 식	"	"	"
하 광 호	"	"	지방수의원(5급)
문 현 철	"	"	"

성명	발령처	원부서	직급
이병열	보건환경연구원	보건환경연구소	지방축산기사
장준형	"	"	지방축산기사보
박형인	"	"	지방보건기사
한중수	"	"	지방보건기사보
정희규	"	"	지방수의사
김남훈	"	"	"
김영근	"	"	"
박정희	"	"	"
이경구	"	"	지방수의사보
조병욱	"	"	"
한인규	"	"	"
김은수	"	"	"
배내석	"	"	"
최태훈	"	"	"
손달주	"	"	"
이덕주	"	"	"
이종덕	"	"	"
오재호	"	"	"
이재신	"	"	"
이광철	"	"	"
박방욱	"	"	"
최정화	"	"	지방약사
문용욱	"	"	지방의제지원
윤용	"	"	지방보건연구원
오세종	"	"	"
김명희	"	"	"
이강문	"	"	"
이규남	"	"	"

성 명	발 명 사 랑	현 부 서	직 급
김 민 영	보건환경연구원	보건환경연구소	지방보건연구원
신 재 영	"	"	"
오 수 경	"	"	"
임 봉 태	"	"	"
이 정 자	"	"	"
유 병 태	"	"	"
양 기 숙	"	"	"
조 남 준	"	"	지방보건연구사
신 정 식	"	"	"
강 화 곤	"	"	"
박 석 기	"	"	"
김 덕 인	"	"	"
김 주 형	"	"	"
박 종 태	"	"	"
김 동 일	"	"	"
김 갑 수	"	"	"
한 상 운	"	"	"
최 병 현	"	"	"
서 병 태	"	"	"
이 병 국	"	"	"
김 광 진	"	"	"
전 욱 현	"	"	"
한 기 영	"	"	"
엄 석 원	"	"	"
장 권	"	"	"
이 만 환	"	"	"
김 석 배	"	"	"
채 영 주	"	"	"
한 선 회	"	"	"

성 명	발령사함	원부서	직급
배철호	보건환경연구원	보건환경연구소	지방보건연구소
한천권	"	"	"
김진곤	"	"	"
손영득	"	"	"
이환수	"	"	"
홍법석	"	"	"
최성민	"	"	"
김정현	"	"	"
김교종	"	"	"
이승주	"	"	"
전재식	"	"	"
가인철	"	"	"
김복순	"	"	"
여수미	"	"	"
김무상	"	"	"
오임희	"	"	"
주명찬	"	"	"
이충언	"	"	"
손진호	"	"	"
허창록	"	"	"
박원희	"	"	"
정애희	"	"	"
김시형	"	"	"
김영수	"	"	"
조기찬	"	"	"
김유경	"	"	"
김연진	"	"	"
장영주	"	"	"
조한빈	"	"	"

성 명	발 명 사 랑	현 부 서	직 급
김 용 국	보건환경연구원	보건환경연구소	지방보건연구사
장 춘 원	"	"	"
김 홍 제	"	"	"
이 해 식	"	"	"
정 종 훈	"	"	"
박 노 운	"	"	"
이 해 나	"	"	"
강 은 미	"	"	"
신 수 용	"	"	"
조 은 미	"	"	"
윤 광 재	"	"	"
명 노 흥	"	"	"
김 양 숙	"	"	"
황 은 진	"	"	"
이 상 미	"	"	"

◎ 1988 년 9 월 9 일 자

5 급 공무원 승진임용

령제 395 호

인 바 번호	성 명	제 청			현 직		
		부 서	직 위	직 급	부 서	직 위	직 급
1	신 일 근	중 로 구		지 방 행정사무관	중 로 구		지 방 행정주사
2	유 병 찬	"		"	"		"
3	이 치 우	"		"	"		"
4	정 건 수	"		"	"		"
5	박 동 운	"		"	"		"
6	이 준 제	중 구		"	중 구		"

제 1422 호 시

보 1988. 9. 30

51-43

인비 번호	성 명	재 성			현 직		
		부 서	직 위	직 급	부 서	직 위	직 급
7	박재홍	중 구		지정사무관	중 구		지정사무관
8	박종인	"		"	"		"
9	장문학	용 산 구		"	용 산 구		"
10	홍명표	"		"	"		"
11	양해만	"		"	"		"
12	이상호	"		"	"		"
13	조수만	"		"	"		"
14	이병만	성 동 구		"	성 동 구		"
15	신종식	"		"	"		"
16	임종순	"		"	"		"
17	안순경	"		"	"		"
18	박종용	동대문구		"	동대문구		"
19	정판훈	"		"	"		"
20	김길택	"		"	"		"
21	정문호	"		"	"		"
22	이해웅	"		"	"		"
23	원재용	성 북 구		"	성 북 구		"
24	이홍달	"		"	"		"

인비 번호	성 명	제 청			현 직		
		부 서	직 위	직 급	부 서	직 위	직 급
25	이 은 실	성 북 구		지 행정 사무관	성 북 구		지 행정 주사
26	채 병 석	"		"	"		"
27	김 태 들	"		"	"		"
28	정 희 준	도 봉 구		"	도 봉 구		"
29	권 영 명	"		"	"		"
30	강 동 회	"		"	"		"
31	이 덕 구	"		"	"		"
32	이 용 대	"		"	"		"
33	박 진 석	노 원 구		"	노 원 구		"
34	조 규 원	"		"	"		"
35	박 의 선	중 랑 구		"	중 랑 구		"
36	정 인 국	"		"	"		"
37	박 정 부	은 평 구		"	은 평 구		"
38	최 홍 대	"		"	"		"
39	윤 경 채	"		"	"		"
40	이 기 환	"		"	"		"
41	이 제 돈	"		"	"		"
42	배 순 대	서 대 문 구		"	서 대 문 구		"

제1422호시

보 1988.9.30 51-45

인사 번호	성명	제정			현직		
		부서	직위	직급	부서	직위	직급
43	신현철	서대문구		지정사무관	서대문구		지정사무관
44	안종도	"		"	"		"
45	김순태	"		"	"		"
46	황백성	"		"	"		"
47	박병철	마포구		"	마포구		"
48	김진택	"		"	"		"
49	유병식	"		"	"		"
50	조복형	"		"	"		"
51	정유성	"		"	"		"
52	김거주	"		"	"		"
53	박호연	"		"	"		"
54	장기연	강서구		"	강서구		"
55	최이현	"		"	"		"
56	김홍기	"		"	"		"
57	이훈실	"		"	"		"
58	정인화	"		"	"		"
59	김제진	구로구		"	구로구		"
60	박형수	"		"	"		"

51-46

제 1432 호 시

보 1988.9.30

연비 번호	성명	제정			현직		
		부서	직위	직급	부서	직위	직급
61	김기택	구로구		지방행정사무관	구로구		지방행정주사
62	최우영	"		"	"		"
63	박성진	"		"	"		"
64	박병하	"		"	"		"
65	추광석	영등포구		"	영등포구		"
66	손승대	"		"	"		"
67	차일환	동작구		"	동작구		"
68	김석배	"		"	"		"
69	윤여홍	"		"	"		"
70	이병동	"		"	"		"
71	박영준	"		"	"		"
72	박동수	"		"	"		"
73	주준경	관악구		"	관악구		"
74	손인목	"		"	"		"
75	김응수	"		"	"		"
76	김영웅	"		"	"		"
77	정태영	"		"	"		"
78	이학식	"		"	"		"

인비 번호	성 명	계 청			현 직		
		부 서	직 위	직 급	부 서	직 위	직 급
79	양 용 식	서 초 구		지방방 정사무관	서 초 구		지방방 정사무관
80	김 사 원	"		"	"		"
81	박 영 종	강 남 구		"	강 남 구		"
82	이 석 화	"		"	"		"
83	김 우 신	"		"	"		"
84	서 철 모	"		"	"		"
85	안 충 업	송 파 구		"	송 파 구		"
86	이 창 희	"		"	"		"
87	임 상 덕	"		"	"		"
88	전 희 구	강 동 구		"	강 동 구		"
89	오 종 근	"		"	"		"
90	조 공 연	"		"	"		"
91	김 명 남	"		"	"		"
92	배 복 용	"		"	"		"
93	이 종 자	운 영 과	강 북 교육장장	"	운 영 과		"
94	최 대 순	"	보 라 매 교육장장	"	"		"
95	최 광 하	"	서 초 교육장장	"	"		"
96	오 장 섭	한강관리사업소		"	한강관리사업소		"

51-48

제 1422 호 시

보 1988.9.30

인비 번호	성 명	제 청			현 직		
		부 서	직 위	직 급	부 서	직 위	직 급
97	홍 성 배	중 구		지 행정사무관	한강관리사업소		지 행정주사
98	조 정 제	내무국 (서울유원피조직위파견) 88.9.9~88.12.31			"		"

5급 기술직공무원 승진임용

령제 401 호

인비 번호	성 명	제 청			현 직		
		부 서	직 위	직 급	부 서	직 위	직 급
1	이 종 일	내무국 (울림피조직위 회파견 88.9.9~89.12.31)	지 토목기	방사	내 무 국		지 토목기 사
2	임 근 수	종 로 구		"	종 로 구		"
3	강 형 우	충 구		"	충 구		"
4	허 찬 욱	강 서 구		"	강 서 구		"
5	이 향 구	동 대 문 구		"	동 대 문 구		"
6	최 인 호	강 남 구		"	강 남 구		"
7	고 동 욱	강 동 구		"	강 동 구		"
8	김 진 수	서 대 문 구		"	서 대 문 구		"
9	황 해 용	동 작 구		지 전측기	방사	동 작 구	지 전측기 사
10	김 병 윤	관 약 구		"	관 약 구		"
11	박 성 군	중 구		"	중 구		"
12	김 규 래	도 봉 구		지 임업기	방사	도 봉 구	지 임업기 사

제1422호 시

보 1988.9.30 51-49

호 1988.9.30

51-49

인비 번호	성 명	배 정			현 직		
		부 서	직 위	직 급	부 서	직 위	직 급
13	이 홍 수	영 등 포 구		지 입 업 기 확	영 등 포 구		지 입 업 기 사
14	홍 은 표	녹 지 사 업 소	시 험 과 장	"	녹 지 사 업 소		"
15	장 해 진	구 로 구		"	구 로 구		"
16	한 희 역	은 평 구		"	은 평 구		"

◎ 1988년 9월 8일자 4 급 공무원 파견 명제 402 호							
성 명	발 령 사 항			현 부 서		직 급	
조 대 룡	대통령비서실과전 ('88.9.8~별도통보시까지)			내무국		지방서기관	

◎ 1988년 9월 10일자 5 급 이하 공무원 파견 명제 403 호							
성 명	발 령 사 항			현 부 서		직 급	
추 광 식	업무과과전(88.9.10-89.3.31)			영등포구		지방행정사무관	
최 배 훈	" (")			법무담당관		지방행정주사	
이 상 홍	" (")			급수과		지방토목기사보	
민 갑 석	" (")			수원기전과		지방화공기사보	
김 학 순	" (")			성동구		지방행정서기	

◎ 1988년 9월 9일자 5 급 공무원 파견 명제 404 호							
성 명	발 령 사 항			현 부 서		직 급	
홍 성 배	한강관리사업소 파견 (88.9.9-88.10.10)			중 구		지방행정사무관	

6 급 건축직공무원 징계처분				령제 405 호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서	직 급	
방 감 원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, 2, 3 호에 의거 “파면”에 처함 (서울특별시 제 1 인사위원회 의결사항)	건축지도과	지방건축기사	
◎ 1988 년 9 월 13 일자 6 급이하 공무원 전보				령제 406 호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서	직 급	
이 곤 승	교통관리사업소	건설행정과	지방행정주사보	
이 상 찬	문화담당관(시립미술관요원)	서울시립대학교	지방행정서기	
◎ 1988 년 9 월 15 일자 6 급이하 공무원 파견				령제 407 호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서	직 급	
김 죽 남	서울올림픽조직위(사격경기본부) 파견('88.9.15-'88.9.24)	동대문구	지방행정주사	
이 치 호	“ (“)	주택개발과	지방행정주사보	
◎ 1988 년 9 월 10 일자 5 급 공무원 파견				령제 408 호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서	직 급	
정 태 욱	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(‘88.9.10-'88.10.30)	서울특별시수습	행정사무관시보	
◎ 1988 년 9 월 14 일자 지방별정직 9 급상당 공무원 면직				령제 409 호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서	직 급	
임 수 영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서울시립대학교	지방별정직 9 급 상당(천공원)	

제 158호, 5-30

제 158호, 5-30

◎ 1988년 9월 14일자

인사발령통지

령제 410호

유 우 통
서울특별시 민방위국 비상계획과 운영
담당(5급상당)에 포함

서울특별시 민방위국 비상계획과

5급상당

승진국

대 통 령
운영직장에 포함

대 통 령
서울특별시

원예 의하여 그직을 편함

대 통 령

◎ 1988년 9월 16일자

6급이하 공무원 파견

령제 411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신종곤	보건위생과 파견 (88.9.16-10.2)	노원구	지방행정서기보
박용현	" (")	중로구	"
이달용	" (")	은평구	"
조양	진급구명안내센터파견(88.9.16-10.16)	동작구	"
김영채	" (")	용산구	지방보건기사보
채수경	" (")	동대문구	지방행정서기
이중욱	관재과 파견(88.9.16-12.31)	성동구	지방행정주사

◎ 1988년 9월 19일자

5급 공무원 전보

령제 412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상범	내무국(부시장비서관)	전산담당관 전산기획계장	지방행정사무관
조희열	전산담당관 전산기획계장	" 전산관리계장	"

◎ 1988년 9월 20일자

3급 공무원 승진

령제 413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명주	교통관리사업소장 지방부이사관	교통관리사업소장직대	지방서기관

서울특별시